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76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김종양 · 고동진 · 김태호
이달희 · 김소희 · 윤상현
배준영 · 박충권 · 강대식
김은혜 · 김위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 안전한 조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제4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② (생략) <u><신 설></u>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건설기계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u> <u>2.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u> <u>3. 안전한 조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제4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4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자에게는 20만원 이</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u>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⑤ -----제4항----- ----- ----- ----- -----.
---	---